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행동 교직원 분리 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31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2. 27.

다.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대안교육기관 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²⁾에 따른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³⁾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⁴⁾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4.10. 기준 25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7	11	11	7	8	259

자료: 교육부, '24.10. 기준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4. 6.)	259개 등록 (‘24. 10.)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최근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⁵⁾, 이는 외부에서 사후적으로 기관 운영 실태를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현장 중심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대안교육기관 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대안교육기관 장의 조치 근거, ② 교육감 보고, ③ 교육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먼저, 개정안은 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이상행동으로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20조의2

것으로 보임.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기관의 일상 운영과 교육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대한 정보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로 보임.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유 중, ‘이상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교육공무원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90호, 2025.2.24.)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임.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2항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조치 이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⁶⁾ 개정안 제3항에 따

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감에게 조치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에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다른 제도권 교육기관과 달리 높은 자율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③ 아울러, 개정안은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에서 지원 항목으로 규정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중,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한 종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7. 22.] 제20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범주에 개정안에서 열거한 교육, 의료가 포함됨.⁷⁾

또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상이 규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교직원’ 등으로 명시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지원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대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524호, 2025.2.27.)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화,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안 제1항 관련>	
○ 교육부: 일부수정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학생, 교직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나,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의 고위험 교직원 긴급조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바, 해당 법률 개정 시에 포함되는 긴급조치 대상 판단 기준을 「대안교육기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일부수정	-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에 분리 조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2항 및 제3항 관련>	
○ 전라남도교육청: 신중검토	-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임용에 관한 권한이 없고,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안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삭제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